

제 336 회 정례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법령 ·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보고

2026. 6.

관 광 체 육 국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(관광체육국)

☐ 건의사항: 총 1건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관광숙박업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	관광산업과

작 성 자

관광산업과장: 남규하 ☎ 2133-2770 관광서비스개선팀장 : 정인선☎2792 담당: 양현정 ☎2796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(관광산업과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관광숙박업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(관광산업과, '26. 4. 24.)	☐ 현황 ○ 최근 일부 숙박시설이 캡슐형 등 밀집형 객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안전기준은 미비한 상황 ☐ 문제점 ○ 캡슐형 객실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○ 관광객이용시설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-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제외 - 또한 객실 수 및 객실 형태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 규정 없어 운영 현황 관리에 한계 - 특히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캡슐형 객실 운영은 제도 취지와 괴리, 화재 위험 및 주민 정주여건 침해 우려 ☐ 건의내용 ○ 호스텔업 등 캡슐형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제한 ○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대상 -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- 객실 수 및 형태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화 - 캡슐형 등 밀집형 객실 형태 제한 - 피난안내도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※ 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(5.19.)에 따라, 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은 소방 재난본부 등에서 정부에 별도 건의 시행(4.24.) ☐ 관련규정 ○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	문화체육관광부 (행정안전부)

□ 관광진흥법 시행령(문화체육관광부)

현행	개정안
제6조(변경등록)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(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) 2.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. 객실 수 및 <u>(추가)</u>형태의 변경(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<u>(추가)</u>만 해당한다) 4. 부대시설의 위치·면적 및 종류의 변경(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) 5.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,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. 부지 면적의 변경,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(아영장업만 해당한다) 7. 객실 수 및 <u>(추가)</u>, 면적의 변경,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,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(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)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	제6조(변경등록)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(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) 2.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. 객실 수 및 <u>객실</u>형태의 변경(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 <u>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</u>만 해당한다) 4. 부대시설의 위치·면적 및 종류의 변경(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) 5.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,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. 부지 면적의 변경,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(아영장업만 해당한다) 7. 객실 수 및 <u>객실형태</u>, 면적의 변경,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,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(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)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[별표 1]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2. 호텔업 마. 호스텔업 1)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)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, 샤워장,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. 다만,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3)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)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5) <u>신설</u> 3. 휴양콘도미니엄업 (생략) 4. 관광객이용시설업 바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(1)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(2) 외국어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(3) <u>(추가)</u>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,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(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), <u>(추가)</u>를 설치할 것 <u>(추가)</u>	[별표 1]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2. 호텔업 마. 호스텔업 1)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)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, 샤워장,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. 다만,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3)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)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5) <u>캡슐형 객실*의 경우, 개별 캡슐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음</u> * 다수의 이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침대 또는 수면공간을 개별단위로 구획적층(복층 포함)하여 설치하고, 각 단위공간이 일반 객실에 비해 현저히 협소한 구조로 이루어진 숙박형태를 말함 3. 휴양콘도미니엄업 (생략) 4. 관광객이용시설업 바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(1)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(2) 외국어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(3) <u>객실마다</u>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,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(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), <u>피난안내도, 휴대용비상조명등, 가스누설경보기(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)</u>를 설치하고, <u>자체 화재점검(반기별 1회) 및 관리대장 비치할 것</u>

현행	개정안
사. 한옥체험업 (1) ~ (3) 생략 (4)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,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(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), <u>(추가)</u>를 설치할 것 <u>(추가)</u> (5~12) 중략	사. 한옥체험업 (1) ~ (12) 생략 (4)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,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(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), <u>피난안내도, 휴대용비상조명등, 가스누설 경보기(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)</u>를 설치하고, <u>자체 화재점검(반기별 1회) 및 관리대장 비치할 것</u> (5~12) 중략

□ 제도개선 건의(문화체육관광부)

현행	개정안
<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> 객실 형태 관련 제한 규정 없음	<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> <u>한국기정문화 및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취지 등 고려, 캡슐형 등 밀집형 객실운영 제한</u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(행정안전부)

현행	개정안
[별표 3]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2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<u>(추가)</u>	[별표 3]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2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<u>및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비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사목 한옥체험업을 하는 시설</u>